

2024학년도

법학부 학사운영 규정집

총합본 제정 : 2019. 1. 1.(시행)

개정 : 2019. 8. 19.

개정 : 2020. 3. 2.

개정 : 2021. 2. 2.

개정 : 2024. 2. 28.



광운대학교

제1편 전공교과과정, 전공필수교과목 및 다전공(심화,복수,부,연계)

1. 전공교과과정 및 전공필수교과목 (전공필수과목 제외/ 전공선택 과목은 세부전공 상관없이 수강 가능)

	일반법학전공	기업법무전공	과학기술법무전공	국제법무전공 (~2023)
1-1	헌법1, 민법총칙1	헌법1, 민법총칙1	헌법1, 민법총칙1	헌법1, 민법총칙1
1-2	헌법2, 민법총칙2, 형법총론1	헌법2, 민법총칙2, 형법총론1	헌법2, 민법총칙2, 형법총론1	헌법2, 민법총칙2, 형법총론1
2-1	채권총론, 형법총론2, 행정법총론, 기본권론	상법총론, 개별적근로관계법 채권총론, 형법총론2	과학기술법제론, 지적재산법 채권총론, 형법총론2	국제법1, 개별적근로관계법, 채권총론, 형법총론2
2-2	행정구제법 채권각론, 형법각론	회사법, 집단적노사관계법 채권각론, 형법각론	특허법, 미디어와법 행정구제법, 채권각론, 형법각론	국제법2, 회사법, 집단적노사관계법, 채권각론
3-1	물권법, 부동산공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어음수표법, 사회보장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법개론, 상표법, 민사소송법	국제계약법, 어음수표법, 민사소송법
3-2	헌법재판론, 행정법각론 민사소송실무, 형사정책	보험법, 노동법판례연구, 세법	인공지능과법, 저작권법	영문계약실무클리닉
4-1	형사법판례세미나, 행정법판례세미나, 형사소송실무	경제법	디지털법률행위론, 특허심판과소송실무	국제경제법
4-2	담보물권법	노동관계법실무	데이터법이론과 실무	국제조직법, 국제거래법

전공필수과목

구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일반법학전공	채권총론	행정구제법	민사소송법	
기업법무전공	채권총론, 개별적근로관계법		민사소송법	
과학기술법무전공		특허법, 행정구제법	민사소송법	
국제법무전공(~2023)	채권총론, 국제법1* (개별적근로관계법)		민사소송법	

* 국제법무전공은 2022학년도까지는 “국제법1”이 전공필수이나, 2023학년도 부터 “국제법1” 대신 “개별적근로관계법”이 전공필수임.

2. 다전공(심화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등)

(1) 제도의 의미

입학한 학생이 학과 전공을 이수하면서 심화전공이나 복수·부·연계전공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학과전공	입학학과의 전공이다. 자신이 소속된 학과의 전공을 45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심화전공	입학한 학과의 전공을 심화하는 것으로서 입학한 학과의 전공을 최소 45학점 이상 이수한 후 그 전공을 추가로 15학점 이상 더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총 60학점 이상/단, 2016학번 포함 이전학번은 25학점 이상 이수하여 총 70학점 이상). 심화전공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해야 한다.
복수전공	본인이 소속한 학과의 전공을 이수하면서 다른 학과 전공을 36학점~54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2016학년도 포함 이전학번은 45~66학점 이상) 자기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해야하고, 복수전공학과와 전공필수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단, 건축학과(5년제)는 별도 운영)
복수심화전공	본인이 소속한 학과의 전공을 이수하면서 다른 학과의 전공을 심화전공으로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반드시 복수심화전공학과에서 졸업시험(논문)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전공	자기학과의 전공을 이수하면서 다른 학과 전공을 21학점~30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부전공학과와 전공필수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단, 건축학과(5년제)는 별도 운영)
연계전공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 대학원을 연계하여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연계전공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마이크로전공	본인이 소속한 학과의 전공을 이수하면서, 다른 학과의 전공을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현재 지능형로봇학과의 마이크로전공만 신청 가능, 추후 확대 예정)

(2) 복수 (심화)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는 학과

스포츠융합학과(생활체육학과) 체육특기자 학생들은 일반학과를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3) 복수전공과 부전공의 차이 및 신청 시기

학위증에 복수전공은 자기학과와 복수전공학과와 전공이 모두 표시되며, 부전공은 부전공이라고 표시된다.

복수전공이나 심화전공의 첫 번째 신청은 2학년 1학기 수강신청 전 학교에서 지정하는 기간에 신청한다. 첫 번째 신청 이후에도 매년 매학기에 신청 기간이 있다. 또한 매학기 소정의 기간 동안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4) 소속학과와 복수전공학과에 동일하게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소속학과와 복수전공학과에 동일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거나, 소속학과와 복수전공학과 간에 타학(과)부 전공 인정 과목 인정제에 해당되는 과목이 있고, 이러한 교과목을 소속학과 또는 복수전공학과에서 이수한 경우, 소속전공과 복수전공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단, 소급적용 불가) 인정범위는 9학점 이내로 하며, 졸업이수학점으로는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부전공에도 적용된다.

제2편 법학부 장학금 신청, 제출서류 및 선발기준

1. 법학부 재학 중인 학생에게 수여될 각종 장학금은 아래 규정될 사항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 지급될 수 있으며, 학생이 스스로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 학생은 매 학기 취득학점을 고려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장학금의 종류는 접수 및 선발 부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성적우수장학금 및 프론티어장학금 / 문의처 : 법학부 사무실(한울관 106호, Tel. 02-940-5340)

- 법학부에서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장학생을 선발한다.
- 법학부는 매 학기마다 학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 신청양식은 게시된 양식에 따르고, 법학부 사무실(한울관 106호)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 위의 사항에 따르지 않은 경우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학부 교수 3인 이상이 참여한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2) 화도/동해장학금 및 국가고시 장학금 / 문의처 : 학생복지처(복지관 202호, Tel. 02-940-5032)

- 학생복지처에서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장학생을 선발한다.
- 해당 장학금의 선발기준 및 신청방법은 광운대학교 대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상시 참고하여야 한다.

3. 장학금 선발과 수혜에 대한 중복요건 등은 다음과 같다.

- (1) 장학금의 성적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학기에 한함(계절학기 제외)
- (2) 장학금은 중복하여 수혜를 받을 수 없으나,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함
 - 1) 국가장학금, 대응장학금, 가족장학금, 국가고시장학금 : 등록금 범위 내
 - 2) 봉사장학금, 근로장학금, 빛솔재장학금, SW장학금
 - 3) 외부기관 지침에 따라 중복수혜가 가능한 장학금
- (3) 성적우수 및 프론티어장학금은 신청한 학기 재학 중인 학생이 신청대상이며 복학학기에 신청 불가함
 - 교내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경우, 등록 후 휴학은 불가함.
 - 휴학생의 교내장학금은 선발 취소 및 반환이 원칙이나 성적우수 및 프론티어장학금에 한하여 복학학기까지 유지됨(복학학기 등록금고지서에서 선감면)
- (4) 자퇴 또는 제적되는 학생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 (5) 수업연한 초과자는 신청할 수 없음.

4. 장학금의 신청자격과 선발기준은 다음 요건에 따른다.

(1) 성적우수장학금

1) 신청자격

- ① 신청일이 속한 해당 학기의 성적에 따라 수여되므로 특별한 제한은 없음
- ② 공고된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선발대상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됨

③ 장학금 분배 기준액(다만 사정에 따라 해당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학년별 수석(등록금 100%), 참빛(등록금의 50%), 비마(등록금의 25%)

2) 제출서류 (모든 신청서류에는 상단에 반드시 학번/이름/학년/세부전공/연락처를 기재해야 함)

① 강의수강내역서

* 출력방법 : KLAS 접속 -> 학번, PW입력 후 로그인 -> 상단메뉴 수강/성적 조회 클릭 -> 학번과 수강신청 과목이 한번에 보이게 조정하여 캡처 후 그대로출력

② 공인 영어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규정에 따라 가산점 부과 대상임(3단계 구분하여 적용)

3) 선발기준

① 주요 기준

학년	선발기준		비고
1학년	1학기	[학교기준] 직전학기 취득성적 15학점 이상 + 평점 3.0 이상 (이수학점은 F 제외, 평점은 F, D 포함한 학적부 성적 기준) [학과기준] 전공과목 6학점 이상	※ 공인 영어 성적(평점에 가산점 적용)(2024.2.28. 개정) ① 토익 기준 : 750점~849점 (0.2점 가산) ② 토익 기준 : 850점~929점 (0.3점 가산) ③ 토익 기준 : 930점 이상 (0.4점 가산)
	2학기	[학교기준] 직전학기 취득성적 15학점 이상 + 평점 3.0 이상 (이수학점은 F 제외, 평점은 F, D 포함한 학적부 성적 기준) [학과기준] 전공과목 9학점 이상	
2학년	[학교기준] 직전학기 취득성적 15학점 이상 + 평점 3.0 이상 (이수학점은 F 제외, 평점은 F, D 포함한 학적부 성적 기준) [학과기준] 전공과목 15학점 이상(단, 복수/부/연계전공자는 법학전공과목 9학점 이상, 나머지 6학점에 해당하는 전공학점은 법학/복수/부/연계전공을 불문함)		
3학년	[학교기준] 직전학기 취득성적 15점 이상 + 평점 3.0 이상 (이수학점은 F 제외, 평점은 F, D 포함한 학적부 성적 기준) [학과기준] 전공과목 15학점 이상(단, 복수/부/연계전공자는 법학전공과목 9학점 이상, 나머지 6학점에 해당하는 전공학점은 법학/복수/부/연계전공을 불문함)		
4학년	[학교기준] 직전학기 취득성적 12학점 이상 + 평점 3.0 이상 (이수학점은 F 제외, 평점은 F, D 포함한 학적부 성적 기준) [학과기준] 전공과목 9학점 이상(단, 복수/부/연계전공자는 법학전공과목 6학점 이상, 나머지 3학점에 해당하는 전공학점은 법학/복수/부/연계전공을 불문함)		

※ 참고 : 월반복학의 경우 4학년 재학기간이 2개 학기를 초과하면 장학금 산정은 2개 학기 부분만 4학년 학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예시) 6학기 때 4학년으로 월반복학 한 경우 → 남은 학기는 총 3학기이지만, 4학년 기준 대상은 7, 8학기가 이에 해당한다.

② 세부 기준

- 법학부 신청자는 학교기준과 학과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학점 수는 학기말 취득학점)
 - 성적발표일 전에 성적장학금을 신청하므로 평점 3.0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지만, 선발하는 과정에서 평점 3.0 미만인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법학부 재학생을 선발 대상으로 하므로 법학전공과목에 대한 최소기준을 충족하여야 함(각 학년 및 학기 단위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수강 신청 시 확인 필수)
 - 법학부 재학생으로서 다전공(복수/부/연계)을 이수하고 있더라도 법학전공학점의 최소기준을 충족하여야 선발대상이 됨
- ※ 예시 : 법학부 재학생으로서 경영학을 복수전공 중인 3학년 학생은 해당 학기에 총 15학점 이상 취득해야 하며, 그중 법학 전공학점이 9학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나머지 6학점에 해당하는 전공학점은 법학, 복수전공을 불문함

③ 공인 영어 성적 가산점 기준(2024.2.28. 개정, TEPS관리위원회 환산표 참고)

외국어	점수 기준		
	0.2 가산	0.3 가산	0.4 가산
TOEIC(정규)	750 ~ 849점	850 ~ 929점	930점 ~
TOEFL(IBT)	85 ~ 98점	99 ~ 108점	109점 ~
New TEPS	285 ~ 335점	336 ~ 399점	400점 ~
G-TELP(Level2)	69 ~ 82점	83 ~ 93점	94점 ~

- 장학금 신청자는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자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점수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학점에 반영함
- 평점 3.5를 획득한 학생이 토익 850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 평점 3.8로 간주함
- 공인 영어 성적은 장학금 신청기간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발급문서라야 함

(2) 프론티어장학금

1) 신청자격

- ①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5학점(4학년은 12학점)이상, 학점이 2.5 이상인 자
- ② 학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제출서류 (모든 신청서류에는 상단에 반드시 학번/이름/학년/세부전공/연락처를 기재해야 함)

- ① 프론티어장학금 신청서 1부 : 공지사항 첨부파일참조(반드시 지도교수 확인 서명 받아 제출)
- ② 자기활동소개서 :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조
- ③ 기타 봉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④ 강의수강내역서

* 출력방법 : KLAS 접속 -> 학번, PW입력 후 로그인 -> 상단메뉴 수강/성적 조회 클릭 -> 학번과 수강신청과목이 한번에 보이게 조정하여 캡처 후 그대로출력

3) 선발기준

종류	지급금액	신청자격기준	신청서류
프론티어	등록금의 25%	- 학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5학점(4 학년 12학점) 이상, 평점 2.5 이상 인 자 (이수학점은 F 제외, 평점은 F, D 포함한 학적부 성적 기준)	- 프론티어장학금신청서 : 첨부양식 - 자기활동소개서 : 첨부양식 ※ 반드시 신청서에 지도교수 확인서명 받아서 제출

(3) 화도 및 동해장학금 → 2020학년도 1학기 선발부터 신청절차 및 명칭 변경.

1) 신청자격(동시 충족조건임)

- ① 신청학기 재학예정자(재학생, 복학신청&서류제출 완료한 복학생)
 -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 복학생은 1, 2차 신청 모두 가능
- ② 신청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서류제출, 소득동의까지 완료) 중 소득구간 0~8구간으로 확인된 자
 - 상기조건은 화도/동해장학금 1차 신청자에 한하며, 2차 신청할 복학생은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도 가능
- ③ 직전학기 취득학점(계절학기 제외)이 12학점 이상(F 제외한 학적부 성적 기준)
- ④ 직전학기 취득 평량평균(계절학기 제외)이 2.0 이상(F, D 포함한 학적부 성적 기준)
 - 외국대학파견, 현장실습참여 등의 사유로 성적증명서 상에 심사대상 학기 평점평균이 표기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점평균이 부여된 최근학기 성적을 적용. 단, 심사대상 학기 성적이 NP인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음

2) 신청방법 및 선발기준 등

⇒ 광운대학교 대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상시 참고하여 신청시기와 방법 및 선발기준 등을 확인해야 함.

(4) 국가고시 장학금

1) 신청자격

장학금명	신청자격	장학금액	장학금지급기간
국가고시 장학금 (1종)	① 국가공무원 5급(행정직, 기술직), 외교관후보자 및 공인회계사, 변리사 시험의 합격자	1차 합격자 : 등록금 전액 지급	합격일 후 다음 학기부터 2개 학기
	②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5학점 (4학년 12학점) 이상, 평량평균이 2.5 이상인 자	최종 합격자 : 등록금 전액 지급	합격일 후 다음 학기부터 졸업학기 까지
국가고시 장학금 (2종)	①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시험의 합격자	1차 합격자 : 등록금의 25% 지급	합격일 후 다음 학기부터 2개 학기
	②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5학점 (4학년 12학점) 이상, 평량평균이 2.5 이상인 자	최종 합격자 : 등록금의 50% 지급	합격일 후 다음 학기부터 졸업학기 까지

2) 신청방법(직접제출 또는 이메일제출)

⇒ 광운대학교 대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상시 참고하여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야 함.

3)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장소
계속수혜자	국가고시 장학금 신청서	공지사항 첨부파일
신규수혜자	국가고시 장학금 신청서	공지사항 첨부파일
	해당 시험 합격 증명서 사본	해당기관
	본인명의 통장 사본 (등록금 납부 휴학 후 복학한 학생만 제출)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양식(첨부파일)은 1, 2학기 각 1회차 2회차 나누어 예정되어 있으며 대표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상시 참고하여 확인해야 함.

4) 장학금 지급방법 : 등록금고지서 선감면(등록금 납부 휴학 후 복학한 학생은 학기 중 학생계좌로 입금)

5) 유의사항

- ① 정규학기(등록학기 기준 8학기, 건축학과는 10학기) 내에서만 지급함.
- ② 합격일 후 도래하는 다음 학기부터 2개 학기 내에 재학 상태로 신청한 경우에 유효하며 학기 기준일은 개강일임.
(예시) 2024년 3월 1일에 합격자 발표한 경우, 2024-1학기, 2024-2학기 중 재학상태로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유효함
- ③ 장학생의 등록 후 휴학제도 폐지. 장학생 선발 후 휴학할 경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됨.
- ④ 직전학기 취득학점은 F학점을 제외한 이수학점임.
- ⑤ 직전학기 취득성적 평량평균은 F, D학점 포함한 학적부성적 기준임
- ⑥ 1차 합격에 따른 장학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동종의 시험에 최종 합격한 경우, 1차 합격 잔여 장학금은 소멸되며 최종합격에 따른 장학금을 수혜받게 됨.
- ⑦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하며, 교외장학금을 우선 지급함. 교외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받은 경우 국가고시장학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수혜횟수는 차감함.

제3편 법학부 졸업요건과 그 면제사유

1. 법학부는 학칙의 범위 내에서 졸업요건을 정하며, 졸업시험과 졸업논문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학부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라 다른 요건을 정할 수 있다.

(1) 졸업논문

- 논문양식(각주 등)을 준수하여 작성(표절 요건 심사 가능)
- 주제는 논문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선정
- 분량은 A4, 10포인트, 줄간격 180 기준으로 40매 내외

(2) 졸업시험

- 헌법, 민법, 형법 3가지 과목 시행
- 각 과목당 70점 이상 획득하여야 통과함
- 매년 4월과 10월 중 시행(학사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졸업시험 또는 졸업논문의 면제 신청자는 공고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학부사무실(한울관 106호)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하며 졸업시험, 졸업논문 또는 기타 면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졸업이 불가한 학생은 공고된 기간 내에 확인서를 학부사무실 직접 방문 또는 E-Mail(lawassist@kw.ac.kr)로 제출해야 한다. 이메일로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학부 사무실(02-940-5340)로 확인하여야 한다.

3. 졸업시험 또는 졸업논문의 시행은 일정 기간 전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4. 졸업시험 또는 졸업논문의 면제는 다음 다섯 가지 중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1) 외국어 성적

- ① TOEIC : 800점 이상
- ② TOEIC 800점 이상에 상응하는 TOEFL(IBT), TEPS, TOEIC Speaking, OPIC, JPT, (新)JLPT, CPT, (新)HSK 등의 성적. 단,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제출로 면제됨 (2024.2.28. 개정)
- ③ 어학성적 증명서 유효 기준 : 대학본부로 졸업대상자 학부 송부일까지 유효한 발급문서라야 함.

외국어 성적 기준(2024.2.28. 개정)			
영어	일본어	중국어	기타
- TOEIC: 800점 이상 - TOEFL: 91점 이상 - New TEPS: 309점 이상 - G-telp(Level2): 76점 이상 - TOEIC Speaking: 6급(150점 이상) - OPIC : IM3이상 - PTE : 43점 이상	- JPT: 800이상 - (新)JLPT : N1이상	- CPT : 760이상 - (新)HSK : 5급(210점 이상)	- TOPIK 4급 (외국인 유학생 대상)

(2) 공무원시험 합격자 및 자격증 취득자

- 로스쿨 입학예정자,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관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이에 준하는 자격(법학부 교수회의에서 자격 인정을 심사할 수 있음)
- 시험합격 증빙서류(현재 근무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3) 취업자

-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근무처 양식 및 건강보험공단 발급 양식)
- 재직증명서의 유효 기준은 어학성적 증명서의 유효 기준에 따른다.

(4) 법학전공취득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2019학번 포함 그 이전 학번은 78학점 이상)

- 성적증명서 제출(전공과목은 교과과정표에 전공선택 또는 전공필수로 표기된 과목으로 한정함)

(5) 법학적성시험(LEET)

- 법학적성시험(LEET) : 100점 이상.
- 법학적성시험(LEET)의 경우 3학년 또는 4학년 재학 중에 실시된 시험의 증명서 제출(2021.02.02.개정)

제4편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2024. 02. 07. 교무처 문서 기준)

1. 출석인정 대상자

- 가. 졸업예정자로 조기취업한 학생
- 나. 8학기 이상(건축학과 10학기 이상)부터 초과 학기까지 해당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원 인정범위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제8조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원 관련 사항은 조기취업한 학생의 “학점인정”이 아닌 “취업으로 (대면수업)결석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출석점수를 제외한 학점 인정을 받기 위한 사항(비대면 온라인수업, 시험, 과제 등)은 학생 본인이 반드시 참여하거나 충족하여야 함

3. 출석인정 신청 절차

- 가. 학생 : 해당 학기 수강 과목 교원에게 미리 고지한 후,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 (지도교수 날인 필수)
- 나. 소속학과 : 제출 학생이 인정대상자임을 확인하여 학과(부)장 날인 후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
- 다. 단과대학 교학팀 : 학과별 학생 제출서류를 수합하여 인정대상자임을 확인하고 교육지원팀으로 송부
- 다. 교육지원팀 : 조기취업자출석인정 학생신청 현황 시스템 등록

4. 학생 제출 서류

(1) 필수 제출서류

- ① 조기취업출석인정원
- ② 재직증명서
- ③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http://www.4insure.or.kr>)에서 출력 가능

※ 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구분	필수 제출서류
인턴 (고용확정형, 채용연계형만 가능)	① 인턴 합격증(채용전환형, 고용연계형 단어 명시 필수) ② 인턴참가확인서(시작일 및 종료일 명시 필수) - 단순 경험/체험형 인턴은 제외 - 합격증에 ‘채용전환’, ‘고용확정’에 대한 문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합격증과 함께 해당 내용이 명시된 채용 공고문 등을 제출
공무원 입사 전 연수생(교육생) 수습생(입사 확정자)	① 입사합격증 ② 연수, 교육, 수습 참가확인서(시작일 및 종료일 명시 필수) ③ 발령통지서
개인사업자	①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 ② 재직증명서
해외 취업자	① 고용계약서 ② 비자사본

6. 기타 안내사항

가. 해당학기 수강신청 과목 중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수업만 인정대상임

- 비대면(녹화동영상100%)로 진행되는 교과목의 비대면수업은 참여(출석)해야함
- 혼합수업 중 비대면수업(녹화동영상50%)으로 진행되는 교과목의 수업은 참여(출석)해야함
- 비대면(동시화상수업100%, 동시화상수업50%)으로 진행되는 교과목의 비대면 수업은 대면수업으로 인정하여 조기취업자출석인정 대상임

나. 해당 학생은 신청서 제출 전 취업으로 인한 결석이 발생하는 시점에 반드시 수강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취업한 사실을 알려야 함(담당교원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제출대상자는 수강하려는 교과목의 담당교원에게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원 제출대상임을 미리 고지하고, 해당수업에서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 제출로 대면수업에 대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람

라.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 제출자 중 중도에 퇴직하거나 재직기관 변경등으로 재직사항이 변경될 경우 즉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신규로 제출하여 학기말 재직사실 재확인시 문제가 없도록 해야하며, 중도퇴사 시에는 바로 다음날부터 수업에 참석해야함

마.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제도는 정규학기에만 적용하며 계절학기에는 적용되지 않음